

추심금공탁사유신고

사 건 2000타채000 채권압류 및 추심

채권자 000

채무자 ◇◇◇

제3채무자 ◆◆◆

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○○. ○. ○. 추심명령을 얻고 제3채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채권을 추심하였으나,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(가압류, 배당요구)가 경합되어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, 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2항에 따라서 공탁사유신고를 합니다.

아 래

- 1. 채권자는 ○○지방법원 20○○타채○○○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별지목록 기재 표시 채권전액 금 ○○○○원을 제3채무자로부터 20○○. ○○. 추심하였습니다.
- 2.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 ◉◉◉가 ○○지방법원 20○○타채○○○○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가 경합되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○○지방법원 20○○년 금 제○○○호로 공탁공무원에게 추심 금전액을 20○○. ○○. ○. 지체없이 공탁하고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.

첨 부 서 류



 1. 공탁서원본
 1통

 1.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본(채권자 ◉◉◉)
 1통

 1. 채권표시목록
 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				. ō
제출법원	집행법원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	rww.klac.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	S
기 타			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. 이러한 추심신고	
	다른 압류·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			
	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(민사집행법 제236조).			
	• 추심신고의	무는 추심명령	병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!	도 발
	생하며, 계	속적 수입채권	l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	하여
	야 함.			
	・추심신고기	- 있으면 다른	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	무되지
	않음(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2호). 따라서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			
	른 채권자	들의 배당요구	가 없으면 추심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만족을	얻게
	됨.			
	· 추심의 신.	고가 있는 때어	는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하여	여 민
	사집행법 제159조제2항, 제3항에 준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			
	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, 일부가 변제된 경우에는 그			
	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 주는 등의 조			
	치를 취해야 함.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